

TV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가입고객"이 IPTV, 디지털 케이블방송 등 TV 상에서 "대상카드"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 하나카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가입고객"에게 제공하는 본인인증 서비스인 TV 간편결제서비스(이하 "TV간편결제"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① "TV간편결제"란 TV에 연결된 수신용기기(셋톱박스)를 통하여 TV간편결제 계정 등록(최초 1회)後, 구매시 카드정보 입력 없이 SMS 결제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② "대상카드"란 "TV간편결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카드로서, "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를 말합니다.
- ③ "가입고객"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TV간편결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카드"의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카드비밀번호, CVC번호, 휴대전화번호(이하 "카드번호 등" 이라 합니다)를 등록하고 "휴대폰인증"을 거쳐 "TV간편결제" 이용을 신청하고, "회사"의 인증 및 승낙을 받아 "회사"와 "TV간편결제" 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말합니다.
- ④ "휴대폰인증"이란 "가입고객"이 본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로 수신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입고객"의 본인확인을 하는 인증절차를 말합니다.
- ⑤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가입고객"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1.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2.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3.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4. 이용자의 생체정보
 5. 제1호 또는 제2호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 ⑥ "인증서"라 함은 실지명의를 확인된 「전자서명법」상 인증서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서비스 가입대상)

"가입고객"이 되실 수 있는 분은 "회사"로부터 "대상카드"를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소지한

회원에 한합니다.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 ① "TV간편결제"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이 이 약관에 동의하고 "TV간편결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 카드"의 "카드번호 등"을 TV 상에서 등록하고 이용신청 하신 후, "휴대폰인증"을 거쳐 회사가 이에 승낙하면 "TV간편결제" 이용계약이 성립하여 "가입고객"이 됩니다.
- ② "TV간편결제"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IPTV 등을 이용하기 위한 고유단말기(셋톱박스)를 설치하고, "휴대폰인증"을 받아야 하며, 동 인증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TV간편결제"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③ "TV간편결제" 신청("휴대폰인증" 포함)은 신청하시는 분 본인이 직접 이행하셔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하게 하거나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 5 조 (가입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TV간편결제"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TV간편결제" 신청 시점에 "대상카드"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타인의 "카드번호 등"을 도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는 경우
3.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4. "휴대폰인증" 불가, 셋톱박스 미 보유 등 서비스 제공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5.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해킹 이용 등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6 조 ("TV간편결제"의 이용 및 철회)

- ① "가입고객"은 TV 상에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TV간편결제"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 ② "가입고객"은 등록된 대상 카드 중 결제할 카드를 선택하고, "휴대폰인증" 절차를 통해 TV 상에서의 전자상거래를 완료합니다.
- ③ "TV간편결제"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으로 합니다.
- ④ "가입고객"은 "TV간편결제"를 이용한 전자상거래에 대해, 결제한 가맹점에 요청하여 해당 전자상거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의 방법 및 기간은 전자금융거래법 제14조를 따릅니다.

제 7 조 ("TV간편결제"의 이용제한 및 면책)

- ① "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입고객”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30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입고객”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해킹 등으로 “회사” 또는 “가입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된 경우
 6.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7. 기타 “가입고객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③ “가입고객”의 거래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및 통신장애 등으로 거래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 8 조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TV간편결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 ②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입고객”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가입고객”의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③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고객”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가입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9 조 (“가입고객”의 의무)

- ① “카드번호 등” 및 인증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가입고객”에게 있으며, “가입고객”은 이를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② “가입고객”은 “카드번호 등” 및 인증번호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③ “가입고객”은 자신의 명의를 도용되거나 “TV간편결제”가 제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④ “가입고객”은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TV간편결제”의 이용정지 및 해지)

- ① “가입고객”이 “TV간편결제”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TV에서 제공되는 “TV간편결제” 해지메뉴를 통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상기 절차를 통한 해지신청의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 합니다.
- ② “회사”는 “가입고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TV간편결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제13조 제1항에 정한 방법 중 1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정지 예정 사실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 3호의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서비스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유 발생 당일 고지)
 1. “가입고객”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2. 타인의 “결제수단”을 도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결제수단”을 등록하는 경우
 3. “가입고객”이 타인의 “접근매체”를 등록하여 “TV간편결제”를 이용하는 경우
 4.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 ③ “회사”는 “가입고객”의 “TV간편결제” 이용 정지 상태가 해소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당일 제13조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가입고객”에게 알려드립니다.
- ④ “회사”는 “가입고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영업일 전에 “TV간편결제”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제13조 제1항에 정한 방법 중 1 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해 알려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TV간편결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제5호의 경우 즉시 해지)
 1. “가입고객”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2. 가입신청서에 필수기재사항 및 “TV간편결제” 이용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가입고객”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3. 타인의 “결제수단”을 도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결제수단”을 등록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4. TV에 연결된 수신용기기의 명의나 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가입고객”이 이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5.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한 경우
 6. “가입고객”이 “회사”가 제공하는 “TV간편결제”를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회사”의 시스템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가입고객”이 “회사”의 “TV간편결제”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다른 “가입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 한 경우

- ⑤ 제 2항 및 제 4 항의 조치에 대하여 "가입고객"은 "회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회사"는 즉시 "TV간편결제" 이용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 ⑥ "가입고객" 본인 명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한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정보의 수집 및 활용)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가입고객"의 동의를 받아 TV 의 수신용기기(셋톱박스) Serial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보안정책 수립, 온라인 정보 도용 및 금융사고 예방, 사고조사, 민원처리 등의 목적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손해배상 및 면책)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가입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하여 "가입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가입고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가입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가입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가입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고객"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가입고객"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가입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2항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가입고객"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2항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가입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또는 "가입고객"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등 다른 법령에 "가입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 ④ "회사"는 이 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 13 조 (정보의 제공 및 회원에 대한 통지)

- ① "회사"는 "TV간편결제"의 운영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가입고객"에게 통지할 때 "회사"의 홈페이지나 "TV간편결제"의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고,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 ② "회사"는 그 밖의 각종 정보 등을 "TV간편결제"의 서비스 화면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약관의 변경승인 등)

- ① 본 약관의 내용은 "TV간편결제" 화면에 게시하여 회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회원이 "TV간편결제"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변경 약관 시행일로부터 1 개월 이전까지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며 "가입고객"에게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가입고객"에게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즉시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 "가입고객"이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⑤ "가입고객"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 15 조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관계법령, 상관례 및 "회사"의 온라인 회원약관, 표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에 따릅니다.

제 16 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터잡은 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용자의 주소지 또는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16년 3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2. 본 약관은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3. 본 약관은 2020년 5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4. 본 약관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5. 본 약관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6. 본 약관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7. 본 약관은 202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